

창원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단1270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미리, 주현빈

피 고 1. A

2.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1. 4. 16.

판 결 선 고 2021. 5. 14.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4,418,4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7.부터 2021. 1. 4.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A과 피고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B 사이에 체결된 2020. 8. 6.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B는 피고 A에게,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0. 8. 6. 접수 제47824호로 마친 근저당권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11. 'D농장'을 운영하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의 E은행에 대한 기업일반자금대출 원리금 채무를, 보증금액 25,500,000원, 보증기한 2022. 9. 5.까지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그러던 중 2020. 9. 12. 피고 A의 원금 연체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0. 12. 17. E은행에 원금 14,373,500원, 이자 62,192원 합계 14,535,69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117,283원을 회수(미환급보증료 상계)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14,418,441원이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다. 피고 A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0. 8. 6. 계란대금 채권자 피고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기존에 2015. 4. 17.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47824호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 변경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피고 A: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피고 회사: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의 1, 2, 갑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액 14,418,441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12. 17.부터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1. 1. 4.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담보금액을 증액하는 위 근저당권변경계약 체결일인 2020. 8. 6.에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청구권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경영 악화로 2020. 7. 20. 사업체를 폐업하였고, 2020. 9. 12. 원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근저당권변경계약 체결일 당시인 2020. 8. 6.에는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원고가 실제로 2020. 12. 1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의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증액 변경계약 당시 피고 A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피고 A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또 다른 채권자인 피고 회사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회사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피고 회사는 위 근저당권 변경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이 피고 A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선의의 수익자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A과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근저당권 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근저당권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연

